

2027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사회통합전형 추진 계획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영재교육원 공용]



2026. 6.

서울특별시교육청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창의미래교육과]

2027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사회통합전형 추진 계획(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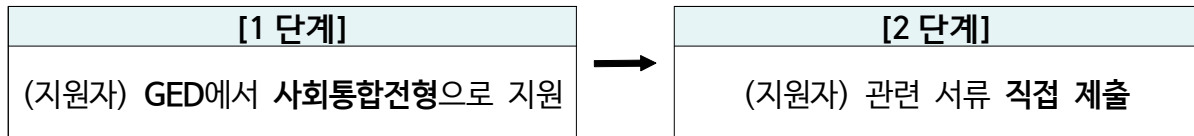
서울특별시교육청 창의미래교육과

 사회통합전형 우선 선발: 모집정원의 **20% 이내**에서 우선 선발함

 사회통합전형 유형 및 기준

전형	순위	유형
기회균등전형	사회통합전형 정원의 60%이상 우선선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법정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자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자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¹⁾
사회다양성전형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160%이하 가정의 자녀	1순위	다문화가족 자녀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소년·소녀가장/조손가족의 자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순직 군경·소방관·교원·공무원 자녀
		다자녀가족(3자녀 이상) 자녀
	2순위	한부모가족 자녀
		군인 자녀
		경찰(해양경찰) 자녀
		소방공무원의 자녀
		환경미화원 자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원 절차



 제출 서류: ① **[서식1]** 지원신청서(출력물)

② **[서식2]** 학교장 추천서(해당자만)

③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확인 증빙 서류

 제출처: 지원하는 영재교육원에 직접 제출 (제출방법: 2027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모집요강 참고)

1) (기회균등전형 유형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로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학교추천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 추천서 발급

2027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사회통합전형 추진 계획

서울특별시교육청 창의미래교육과

I 관계 법령 및 근거

- 영재교육진흥법 제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보훈기본법 등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 2027학년도 사회통합전형 소득확인 방법 안내(부산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3825, 2026. 3. 12.)
- 2027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 사회통합전형 계획 안내(중등교육과-17461, 2026. 5. 8.)

II 기본 방침

- 영재교육기관은 모집정원의 20% 이내에서 사회통합전형으로 우선 선발
- 사회통합전형은 기회균등전형과 사회다양성전형으로 구분하며, 사회통합전형의 60% 이상을 기회균등전형으로 우선선발하고, 미충원 시 사회다양성전형 대상자로 충원
- 사회통합전형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는 적격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심의 및 검증 절차 준수
- 사회 통념상 일반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발기준을 마련하고 경제적·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학생 선발
- 합격이 결정된 경우라도 증명서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발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해당 학생 합격 취소

III 개요

■ 전형 유형

전형	유형
기회균등 전형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법정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자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자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사회다양성 전형	다문화가족 자녀,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²⁾ , 소년·소녀가장/조손가족의 자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순직 군경·소방관·교원·공무원 자녀, 다자녀가족(3자녀 이상) 자녀, 한부모가족 자녀, 군인 자녀, 경찰(해양경찰) 자녀, 소방공무원의 자녀, 환경미화원 자녀

■ 전형 방법: 순위에 따른 단계별 전형 실시

단계	선발
1단계	기회균등전형 대상자를 사회통합전형 정원의 60% 이상 우선선발
2단계	기회균등전형 지원자 중 1단계 우선 선발되지 않은 대상자와 사회다양성전형 1순위 대상자 중 선발
3단계	2단계 미충원 시 사회다양성전형 2순위 대상자 선발

◆ 단계별 전형 시 기준

- ▶ 단계별 전형으로 전형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 **후순위 지원자는 일반전형으로 전환됨**
- ▶ 사회다양성 전형 중 **다자녀가족 자녀는 사회통합전형 모집 정원의 40% 이내로 선발**

■ 심의·검증 절차 강화 및 부정 합격 확인 시 엄정 조치

- 영재교육원: 증빙서류 검증 및 단계별 전형 절차 준수
- 증명서 위조 등 부정 내용 확인 시 합격 취소 등 조치

2) 지원 당시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IV

유형 및 지원자격

유형	대상자	지원 자격
기회균등전형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법정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근거하여 주민센터에 등록된 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대상자로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가구의 자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에 따른 교육비 지원자 중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자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³⁾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50% 및 60% 이하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갑작스런 사유로 기준 중위소득 50~60%이하 수준으로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 「아동복지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 포함(동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 또는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사회다양성전형의 모든 대상자는 '**가무원 수별 중위소득 160% 이하 공통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사회다양성전형	1 순위	다문화가족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당시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자
		소년·소녀가장/조손가족의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이외 소년·소녀가장 또는 조손가족의 자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의 자녀
		순직 군경·소방관·교원·공무원 자녀	순직군경, 순직소방관, 순직교원, 순직공무원의 자녀
		다자녀가족(3자녀 이상) 자녀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족의 자녀(자녀 모두 지원 가능)
	2 순위	한부모가족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제5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 기회균등전형 '으로 지원
		군인 자녀	15년 이상 재직 중인 중령 이하 군인 자녀
		경찰(해양경찰) 자녀	15년 이상 재직 중인 경감 이하 경찰(해양경찰) 자녀
		소방공무원의 자녀	15년 이상 재직 중인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 자녀
		환경미화원 자녀	시·도 또는 군·구 소속으로 재직 중인 환경미화원의 자녀

3) (기회균등전형 유형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로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학교추천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 추천서 발급

기회균등전형 대상자(60% 이상 우선선발) 관련 세부사항

- 기회균등전형대상자→ 9~10쪽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확인 증빙 및 제출 서류’ 참고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지원 학생 본인이 국가보훈대상자이거나 부 또는 모가 국가보훈대상자인 경우)
 - * **교육비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는 소속학교에서 교육지원대상자임을 확인받아 **[서식3]** 확인서 제출 가능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의 범위

※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자(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

▣ 학생 ‘본인 또는 부(또는 모)’가 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발급이 가능한 경우**

보훈대상자	근거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제18호, 제73조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및 그 자녀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자녀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제3호	5.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자녀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제3호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자녀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제4호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5~6쪽의 [예시1, 예시2] 양식 참조

예시) 본인 또는 부(또는 모)가 확인대상자로서 **확인원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가 판단 기준임**

1. 증조할아버지께서 독립유공자로서 지원 학생의 **부가 독립유공자 유족 확인원 발급이 가능한 경우** 지원 가능
2. 외할아버지께서 6.25 참전용사로 전사하여 **모가 국가유공자 유족 확인원 발급이 가능한 경우** 지원 가능
3. 할아버지께서 참전유공자여도, 부(또는 모)는 국가보훈대상자 아닌 경우(또는 확인원 발급이 안되는 경우) **지원 불가**
4. 할아버지께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여도, 부(또는 모)는 국가보훈대상자 아닌 경우(또는 확인원 발급이 안되는 경우) **지원 불가**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학교장 추천 대상자 선정 요건】

-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실업급여 수혜 가정 등)
- 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 능력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로 폐업·휴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아동복지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 또는 제3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증빙 서류 예시】

-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건강보험료 영수증, 급여명세서, 병원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아동복지시설 재원증명서 등

예시1)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원

※ '확인대상자'란에 지원학생 **본인** 이거나 **부** 또는 **모** 기재 시 지원 가능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의4서식] <개정 2023. 6. 5.>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발급번호

독립유공자	대상구분	보훈번호	훈격
	성명	생년월일	등록일자
선순위자	독립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확인대상자	독립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1. 지원학생 본인 2. 지원학생의 부 또는 모	주민등록번호
용도 및 제출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	용도	제출처	

위 확인대상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적용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OO보훈지청장 직인

유의사항

- ※ 이 확인서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교육지원 또는 취업지원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용도 및 제출처란은 작성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인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명	과장	주무	담당자
			전자우편주소

예시2)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원

※ '확인대상자'란에 지원학생 **본인** 이거나 **부** 또는 **모** 기재 시 지원 가능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외5서식] <개정 2023. 6. 5.>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발급번호

국가유공자	대상구분	보훈번호	훈격 또는 상이등급
	성명	생년월일	등록일자
선순위자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확인대상자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1. 지원학생 본인 2. 지원학생의 부 또는 모	주민등록번호
용도 및 제출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	용도	제출처	

위 확인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적용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OO보훈지청장 직인

유의사항

※ 이 확인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교육지원 또는 취업지원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용도 및 제출처란은 작성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인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명	과장	주무	담당자
			전자우편주소

■ 사회다양성전형 ‘공통’ 필수요건

2026년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160% 이하 가정의 자녀

[2026년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160%기준 건강보험료 및 재산세(주택) 과세금액 기준표*]
(단위: 원)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소득월액(건강)포함 금액]		재산세(주택) 과세금액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혼합가입자 (지역+직장)	
2인	181,659	243,833	247,763	982,560
3인	264,935	309,777	318,043	1,428,000
4인	338,641	374,300	390,974	1,864,080
5인	435,046	457,613	490,306	2,271,840
6인	525,833	535,512	584,741	2,655,600
7인	579,249	584,741	634,423	3,024,000
8인	628,429	634,423	712,921	3,392,160
9인	697,282	712,921	838,330	3,760,560
10인	697,282	712,921	838,330	4,128,960

*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분류	내용
지역가입자	원서 제출 기준 최근 6개월의 부모(※이혼한 경우 친부 및 친모)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평균 금액 합산액이 기준표 해당 금액 이하인 가구 ※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세 과세내역 확인 불필요 “지역건강보험료 전환자 중 임의계속가입자”인 경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 함(유의사항2 확인)
직장가입자 혼합(지역+직장)가입자	원서 제출 기준 최근 6개월의 부모(※이혼한 경우 친부 및 친모)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평균 금액 합산액 및 2026년 재산세(주택) 과세금액 합산액 두 조건 모두 기준표 해당 금액 이하인 가구

※ 유의사항 1.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관련

- (개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란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상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의미
※ 단, 직장 및 혼합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료에 ‘소득월액(건강)’을 포함한 ‘고지금액’을 의미
- (제외사항) 장기요양보험료 고지금액 및 연말정산금액(분할) 납부청구액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에서 제외함
▶ 건강보험 연말정산금액을 분할 납부한 경우 “개인별 고지 산출내역(가입자별 부과내역)”을 제출해야 함
(발급방법) “개인별 고지 산출내역(가입자별 부과내역)”: 재직 중인 사업장 업무담당자에게 신청, 공단 전산에 등록된 해당 사업장 팩스번호로만 전송 가능
- 부·모의 ‘최근 1년 간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피부양자 자격 기간 포함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 변동 사항 등을 사전에 확인한 뒤, 원서 제출 기준 최근 6개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평균 금액을 합산

※ 유의사항 2. ‘재산세(주택) 과세금액’ 관련 → 11쪽 ‘대상자 확인 증빙 및 제출서류’ 와 19쪽 ‘참고4’ 참조

- (발급방법) 가까운 주민센터 및 구청(세무민원부서) 직접 방문 발급 ※ 온라인 발급 불가 ※ 부와 모 각각 제출
- (개념) 재산세(주택) 과세금액이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주택 과세 합산금액’을 의미
- 전국에 소유한 모든 주택(아파트)에 대한 과세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토지, 상가 등에 대해 과세된 재산세는 미포함
- (사례1)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1부 제출): 전국 자치단체 재산세(주택)기준 과세 사실 없음 문구가 기재된 전국단위 무관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 (사례2) 서울에 주택을 소유하여 재산세가 과세된 경우(각 1부씩 총 3부 제출): 재산세(주택) 부과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부과되지 않은 내역(서울 내 부과되지 않은 모든 자치구 포함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서울 제외 전국 16개 시·도 기준 해당 세목에 대해 과세 사실 없음이 기재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V

지원 절차

 부정 합격에 대한 엄정 조치 : 증명서 위조 등 부정이 확인되면 합격 취소

■ 사회통합전형 지원

○ 지원 절차



○ 지원 절차별 상세 내용

단계	내용
1단계	(지원자) GED에서 사회통합전형으로 지원 - GED 지원 - [서식1] 지원신청서 작성(학생 및 보호자는 전형 유형, 지원 자격 및 증빙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하는 서명 포함) - 사회통합대상자 확인 증빙 서류 준비
2단계	(지원자) 관련 서류 직접 제출 - [서식1] 지원신청서(출력물) - [서식2] 학교장 추천서(해당자만)⁴⁾ - 사회통합대상자 확인 증빙 서류

○ 사회통합전형 지원서 및 증빙 서류는 지원자 본인(또는 보호자)이 해당 영재교육 원으로 직접 제출

4) (기회균등전형 유형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로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학교추천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 추천서 발급

■ 학교추천위원회 구성 요건 및 역할

- (구성) 교감 포함하여 3명 이내로 구성(위원장은 교감, 위원 중 1명이 실무 총괄)
- (심의 요건) 기회균등전형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로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50% 및 60% 이하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갑작스런 사유로 기준 중위소득 50~60%이하 수준으로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아동복지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가정 위탁 또는 제3조 제10호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포함

※ 대상 학생·학부모의 개인정보 및 심사 서류 내용 등은 철저히 보안에 유의

- (학교장 추천서 발급) 학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장 추천서 [서식2] 발급

사회통합전형 기회균등전형 및 사회다양성전형 지원자 ‘ 공통 ’ 제출서류	공 통 제 출 서 류	발 급 처	비 고
	① (지원자 본인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② (발급기준)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단, 다음 지원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필요 - 다문화가족, 다자녀가족: (발급기준) ‘부’ 또는 ‘모’ 기준 - 한부모가족: (발급기준) ‘자녀(지원자)’ 기준	구청, 주민센터, 정부24(누리집)	○ 정부24(누리집) 바로가기
	③ [서식1]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원신청서	지원자	○ [붙임목차 서식1] (p.23)

□ 기회균등전형 (공통서류①~③ + 지원유형에 해당하는 추가 서류)

기 회 균 등 전 형				
+ 아래 지원유형에 해당하는 제출서류 추가 제출				
지 원 유 형		제 출 서 류	발 급 처	비 고
1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수급자 증명서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를 단독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교육(지원)청, 학교에서도 발급 가능	구청, 주민센터, 학교, 정부24(누리집)	○ 정부24(누리집) ① 수급자 증명서 바로가기 ② 교육급여수급자 증명서 바로가기
2	법정차상위계층 또는 그	차상위자활근로자	주민센터, 복지로(누리집)	○ 복지로(누리집) 바로가기 (인증서 로그인 필요) ※ 복지로 누리집 서류 발급 방법 (참고5)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		

기 회 균 등 전 형

	자 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서식)(p18. 참고 5.)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공단(누리집)	○ 국민건강보험공단(누리집) 바로가기 (인증서 로그인 필요)
3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센터, 정부24(누리집), 복지로(누리집)	○ 정부24(누리집) 바로가기 ※ 본인 유형에 따른 서류 확인 필요 ○ 복지로(누리집) 바로가기 ※ 복지로 누리집 서류 발급 방법 (참고5)
4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교육지원 대상자	○ 교육지원대상자 확인서 (또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택1)	학교, 관할 보훈지청, 정부24(누리집)	○ 학교 [붙임목차 서식3] (p25.)
		교육지원 대상자 외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할 보훈지청, 정부24(누리집)	○ 정부24 바로가기 ※ 본인 유형에 따른 서류 확인 필요
5		기준중위소득50%이하	○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구청, 주민센터, 학교	○ 정부24 바로가기
6		기준중위소득60% 이하	○ 교육비지원 대상자 확인서(확인서 발급 사유: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임을 확인) ▶ 해당 내용이 명기되어 있는지 확인 후 제출) ※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정의 자녀로 교육비지원 대상자임을 반드시 확인 후 추천(NEIS에서 확인 가능)	학교	○ 학교: 학교 행정실에 교육비 담당부서 문의 후 수기발급 요청(※학교장 직인 날인)
7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공단(누리집)	○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인증서 로그인 필요)
			○ 경제적 형편이 곤란함을 증빙하는 기타 제반 서류 -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내역서(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병원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근로소득 원천 징수영수증 등 -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가출, 연락두절 기타 가정형편으로 부모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장 추천서」 또는 「자기확인서」에 동 사실을 명기 - 어느 한 가지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재산세 과세 증명 등을 받아 종합적으로 판단 ○ 아동복지시설 재원증명서, 가정위탁 보호확인서 등	해당 증빙서류별 확인 가능한 기관	○ 학교추천위원회(p8. 구성 요건 및 역할) 심의 후 학교장 확인서[서식2] 발급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으로 학교장 추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교추천위원회 구성 필수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학교장 추천서 [붙임목차 서식 2] (p.24)
			○ [서식2]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학교장 추천서	학교	

□ **사회다양성전형**(공통서류 ①~③ + 사회다양성전형 필수요건 증빙서류 ④~⑥ 또는 ④~⑦ + 지원유형에 해당하는 추가 서류)

사 회 다 양 성 전 형 [※ 필수요건 :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160% 이하 가정 자녀]						
사회다양성전형 지원자 제출 서류 지역건강보험가입자 ①~⑦ 직장건강보험및혼합 (지역+직장)가입자 ①~⑧			제 출 서 류		발 급 처	비 고
			지역건강 보험가입자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최근 1개년 이상 포함) ⑤ 건강보험자격확인서 ⑥ 건강·장기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평균 고지액)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공단(누리집)	○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인증서 로그인 필요)
			직장건강보험 및 혼합 (지역+직장) 가입자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최근 1개년 이상 포함) ⑤ 건강보험자격확인서 ⑥ 건강·장기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평균 고지액) ⑦-1 주택 미소유 시: 전국단위, 재산세(주택) 기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자치단체에 과세 사실 없음’ 문구가 기재된 증명서 1부 제출 ⑦-2 주택을 소유하여 재산세가 과세 된 경우: 19쪽의 참고4 표와 17~19쪽의 참고3-1, 3-2, 3-3의 서식 확인 후 각 1부씩 총 3부 제출		
+ 아래 지원유형에 해당하는 제출서류 추가 제출						
지 원 유 형			제 출 서 류		발 급 처	비 고
1 순 위	1	다문화가족 자녀	○ 부 또는 모가 귀화한 경우 귀화인의 기본증명서(상세) ○ 부 또는 모가 외국 국적자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해당서류 발급기관	
	2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북한 이탈 주민등록 확인서			
	3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선정)결과통지서 사본			

사 회 다 양 성 전 형 [※ 필수요건 :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160% 이하 가정 자녀]

	4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족의 자녀	○ 사실 관계 확인서(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5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 부모의 장애인 증명서 또는 부모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6	순직 군경·소방관·교원·공무원 자녀	○ 순직군경, 순직소방공무원, 순직교원, 순직공무원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7	다자녀 가족 (3자녀 이상) 자녀	○ 추가서류 없음		
2 순 위	1	한부모가족 자녀	○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해당서류 발급기관	
	2	환경미화원의 자녀 (시·도 또는 군·구 소속 환경미화원)	○ 재직증명서		
	3	군인 자녀 (중령 이하)	○ 15년 이상 재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증빙 대상자가 원서접수 기간 동안 지원 대상 계급(예: 중령, 경감, 소방경 이하)자격을 충족해야 함		
	4	경찰(해양경찰) 자녀 (경감 이하)			
	5	소방공무원 자녀 (소방경 이하)			

※ 증빙서류는 원서접수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 지원 자격 확인의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으며, 원서접수 후 서류 심사과정에서 사회통합전형 지원자의 서류 미비 또는 오류가 발견될 경우, 해당 지원자는 일반전형 지원자로 전환됨

참 고 목 차

참고 1	건강보험료 기준 및 가구원 수 적용, 증빙서류 발급 방법	14
참고 2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양식)	16
참고 3-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과세된 지방세(주택) 양식	17
참고 3-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과세되지 않은 지방세(주택) 양식(서울) ..	18
참고 3-3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과세되지 않은 지방세(주택) 양식(전국) ..	19
참고 4	사회다양성전형 재산세(주택)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 방법	19
참고 5	복지로 누리집 서류 발급 방법	20
참고 6	국민건강보험 누리집·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발급 방법	21

참고 1 건강보험료 기준 및 가구원 수 적용, 증빙서류 발급 방법

①	가구원 수 산정 시 유의사항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해당 학생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 및 2촌 이내의 형제·자매 [※(외)조부, (외)조모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 또는 미혼인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기혼인 형제·자매의 경우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 포함(단, 원수접수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만 인정). 주민등록을 같이 하지 않는 경우 미포함 ○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족의 경우 이혼한 배우자(친부 또는 친모)를 포함하여 가구원 수 산정	
②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부·모 중 1명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제출)에 부모가 모두 있는데 건강보험증 사본에 학생만 있거나 부모 중 한 명만 있는 경우 반드시 부모 모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금액을 확인하여 합산 ※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족의 경우 친부와 친모 건강보험료 합산 ○ 학생이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 확인하여 합산	
③	건강보험료 산정 및 적용 방법
○ (산정) 건강보험증에 부양자로 등록된 부모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합산한 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및 연말정산금액(분할)납부청구액은 합산하지 않음) - 직장가입자의 경우, 휴직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시 휴직 전 6개월한 실제 고지된 건강보험료로 산정 ※ 전형일 이전 6개월 중 중간에 휴직한 경우: 중간휴직 이후 일부 고지된 달이 있다면 해당 개월 수와 중간휴직 전 고지된 개월 수를 합하여 6개월 분으로 산정 ○ (적용) ※ 부모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와 모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합산 후 지역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다른 직장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합산 후 직장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건강보험과 직장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합산 후 혼합보험료 기준 적용 ○ (사례) 아버지는 직장건강보험 부양자로 4만원 납부하고 어머니는 지역건강보험 부양자로 2만2천원 납부하는 4인가구의 경우 : 4만원(부)+2만2천원(모) ⇒ 가구 건강보험료(혼합 6만2천원)	

※ 기타 건강보험료 산정 및 사례는 '사회통합전형 Q&A' 참고

④ 제출 자료 발급 방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을 위한 **보험료납부확인서** 발급 방법 -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바로가기](#)

The screenshot shows the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website. The navigation bar includes '민원서비스' (Citizen Services),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정책·제도' (Policy/Regulation), '정보공개' (Information Disclosure), '국민소득·참여' (National Income/Participation), and '공민소개' (Public Introduction). The breadcrumb trail is '홈 > 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 The main heading is '보험료 납부확인서' (Insurance Payment Confirmation Certificate). Below the heading, a description states: '기타청구금 납부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This is a service that allows you to conveniently receive an online confirmation certificate for other claims payments). The '개요' (Overview) section lists: '서비스 대상' (Service Target): 국민 (Citizens), '서비스 유형' (Service Type): 증명서 발급 (Certificate Issuance), and '신청방법' (Application Method): 홈페이지, The건강보험(모바일앱), 디지털ARS(1577-1000), 지사방문. The '자세히 알아보기' (Learn More) section includes '정의/목적' (Definition/Purpose): '납부하신 건강보험·연금보험 보험료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This is a service that allows you to conveniently receive an online confirmation certificate for the health insurance/pension insurance premiums you have paid). On the right, there is a sidebar with '이 페이지의 구성' (Structure of this page) and a list of links: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및 절차', '부가정보', and '정보 변경 내역'. At the bottom right, there are buttons for '목록으로' (Back to List) and '발급하기' (Apply/Issue).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바로가기](#), [자격득실확인서](#) [바로가기](#)

The screenshot shows the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website. The navigation bar includes '민원서비스' (Citizen Services),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정책·제도' (Policy/Regulation), '정보공개' (Information Disclosure), '국민소득·참여' (National Income/Participation), and '공민소개' (Public Introduction). The breadcrumb trail is '홈 > 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 The main heading is '자격확인서' (Qualification Confirmation Certificate). Below the heading, a description states: '본인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This is a service that allows you to receive your health insurance qualification confirmation certificate). The '개요' (Overview) section lists: '서비스 대상' (Service Target): 국민 (Citizens), '서비스 유형' (Service Type): 증명서 발급 (Certificate Issuance), and '신청방법' (Application Method): 홈페이지, The건강보험(모바일앱), 유선(1577-1000), 지사방문. ※ 고객센터(1577-1000) 발급은 만 65세 이상 또는 등록 장애인만 가능합니다. (For issuance via the customer service center (1577-1000), it is only available for those aged 65 and over or registered disabled persons). The '자세히 알아보기' (Learn More) section includes '정의/목적' (Definition/Purpose): '본인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This is a service that allows you to receive your health insurance qualification confirmation certificate). On the right, there is a sidebar with '이 페이지의 구성' (Structure of this page) and a list of links: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및 절차', '부가정보', and '정보 변경 내역'. At the bottom right, there are buttons for '목록으로' (Back to List) and '발급하기' (Apply/Issue).

The screenshot shows the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website. The navigation bar includes '민원서비스' (Citizen Services),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정책·제도' (Policy/Regulation), '정보공개' (Information Disclosure), '국민소득·참여' (National Income/Participation), and '공민소개' (Public Introduction). The breadcrumb trail is '홈 > 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 The main heading is '자격득실확인서' (Qualification Confirmation Certificate). Below the heading, a description states: '본인의 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This is a service that allows you to receive your qualification confirmation certificate). The '개요' (Overview) section lists: '서비스 대상' (Service Target): 국민 (Citizens), '서비스 유형' (Service Type): 증명서 발급 (Certificate Issuance), and '신청방법' (Application Method): 홈페이지, The건강보험(모바일앱), 유선(1577-1000), 지사방문. ※ 고객센터(1577-1000) 발급은 만 65세 이상 또는 등록 장애인만 가능합니다. (For issuance via the customer service center (1577-1000), it is only available for those aged 65 and over or registered disabled persons). The '자세히 알아보기' (Learn More) section includes '정의/목적' (Definition/Purpose): '본인의 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This is a service that allows you to receive your qualification confirmation certificate). On the right, there is a sidebar with '이 페이지의 구성' (Structure of this page) and a list of links: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및 절차', '부가정보', and '정보 변경 내역'. At the bottom right, there are buttons for '목록으로' (Back to List) and '발급하기' (Apply/Issue).

참고 2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양식)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입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장 명칭		①			납부자번호		⑤	
2026년 01월~2026년 12월 납부내역 (단위:원)								
월별	고지금액				납부금액			
	건강 보험료	장기요양 보험료	소득월액(건강)	소득월액(요양)	건강 보험료	장기요양 보험료	소득월액(건강)	소득월액(요양)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②		④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말정산	③		③					
합계								
납부총액			용도구분			납부확인용		
위와 같이 보험료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① 사업장 명칭: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자 명칭이 기재되어 있음(※ 지역가입자: 사업자 명칭 없음) ②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으로 원서 제출 기준 최근 6개월 평균 금액 산출 * 합계금액: 고지금액 합계시, 고지되지 않은 달도 최근 6개월에 포함됨 예) 6개월 중 3개월만 고지금액이 있는 경우: 3개월 건강보험료 합산액 ÷ 6개월 ③ 연말정산: 전년도 연말정산에 따른 건강보험료 가감분(※ 산정에서 제외) ※ 연말정산 금액을 5~10회 분할 납부한 경우: 재직하는 사업장의 업무담당자 신청으로 “개인별 고지 산출내역(가입자별 부과내역)” 신청하여 발급 가능(해당 사업장의 직장가입자여야만 발급 가능) - 유선 발급 시 공단 전산에 등록된 해당 사업장의 팩스번호로만 전송 가능 ④ 소득월액(건강):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금액까지 포함하여 건강보험료 산정 ⑤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납부번호 확인. 납부번호가 동일하면 중복하지 않고 세대주 금액으로만 산정 ※ 참고: 직장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는 납부확인서 발급 자체가 되지 않으며, ‘자격득실확인서’로 피부양자임을 확인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9호서식]

※ 재산세 주택①, ② 금액 합산 (기타 과세 내역제외)

※ ‘전국단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인터넷 정부24에서는 발급되지 않으며,

직접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구청(세무민원부서) 방문하여 발급, 온라인 발급 불가

※ 지방세 부과된 지역(참고3-1) 및 부과되지 않은 지역(참고 3-2, 3-3) 각각 발급하여야 함

참고 3-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과세되지 않은 지방세(주택) 양식[서울]
(예) 서울 내 과세된 자치구 외 나머지 모든 자치구에 재산세(주택)이 없음을 증명하는 사례)

Page : 1/1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9호서식]

발급번호
Issuance Number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Local Tax Assessment Certificate

납세자 TaxPayer	성명(법인명) Name(Name of Corporation)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Resident(Corporation, Foreign) Registration No.	
	주소(영업소) Address(Business Office)		
상호 Company Name	사용목적 Purpose of Use		제증명을 위한 서류제출
과세대상 Tax Objects			
세목 Tax Items	부과년월 Tax Year-Month	부과유형 Tax Pattern	과세번호 Tax No.
			세액 Tax Amount
			비고 Remarks

(예시) [서울특별시] ←자치단체 발급(서울시)

서울 강남구, 서울 강동구, 서울 강북구, 서울 강서구, 서울 관악구, 서울 광진구, 서울 구로구, 서울 노원구,
 서울 도봉구,.....서울 중랑구 ※ 재산세(주택분)이 과세된 자치구 외 서울 내 모든 자치구 표기

[과세연도: 2026년~2026년] 재산세(주택)

위와 같이 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 사실 없음

위와 같이 과세되었음을 증명합니다.
 I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tax assessment is true and correct.

신청인
Applicant

성명(법인명)
Name
(Name of Corporation)

주소(영업소)
Address
(Business Office)

서울특별시 구청장 정장인

년 월 일 (YYYY/MM/DD)

5.9.6.2, 9.1.2
SGD001
승인일: 2024.06.15

Head of the City/County/District/Town Government of Jongno-gu

※ 이 증명서는 재산소유 유무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This certificate does not verify the ownership of any properties.

※ 참고 3-2: (주택을 소유하여 재산세가 과세된 경우)과세된 서울 내 자치구 외 모든 자치구에 대한 재산세(주택) 과세사실 없음을 증빙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서울시 기준 자치단체 발급) 까지 3-1~3-3 각 1부씩 총 3부 제출 필수

참고 3-3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과세되지 않은 지방세(주택) 양식[전국]
(예: 서울 외 16개 시도 지역에 재산세(주택)이 없음을 증명하는 사례)

※ 참고3-1, 3-2, 3-3 서류를 종합하여 '과세된 지역' 및 '과세되지 않은 지역'을 합쳐 17개 시·도가 모두 있어야 함

참고 4 사회다양성전형 재산세(주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 방법

구분	발급 서류
주택 미소유 (제출서류: 1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단위 1부 : '전국 자치단체'에 재산세(주택)를 기준으로 '위와 같이 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 사실 없음'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주택 소유하여 재산세 과세된 경우 (제출서류: 각 1부씩 총 3부) 사례: 서울 A자치구에 주택 소유	참고3-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과세된 지방세(주택)양식 1부 : 서울시 내 재산세(주택) 기준으로 발급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 증빙에서: 서울 A구에 재산세(주택) 해당 세목 과세사실 있는 경우 과세내역이 포함된 서류
	참고3-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과세되지 않은 지방세(주택)양식 [서울] 1부 : (서울시 기준 자치단체 발급) 과세사실 있는 서울시 내 자치구 제외한 모든 자치구 에 해당 세목에 대해 과세사실 없음이 기재된 재산세(주택) 기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 증빙에서: A구 이외 서울시 내 모든 자치구에 재산세(주택) 해당 세목 과세사실 없음이 기재된 서류
	참고3-3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과세되지 않은 지방세(주택)양식 [전국] 1부 : (무관할, 전국단위 발급) 과세사실 있는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도에 해당 세목에 대해 과세사실 없음이 기재된 재산세(주택) 기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 증빙에서: 서울시 이외 다른 광역자치체(16개 시도) 재산세(주택) 해당 세목 과세사실 없음이 기재된 서류
발급처(공통)	★ 서울시 아닌 나머지 16개 시·도에 주택을 소유하여 지방세 재산세(주택)분이 과세된 경우도 위와 동일하게 각 1부씩 총 3부 제출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구청(세무민원부서) ※ 직접 방문 발급만 가능, 온라인 발급 불가

※ 참고 4: 위 서류는 재산세(주택) 과세 여부에 따라 '부와 모 각각'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함

참고 5 복지로 누리집 서류 발급 방법

복지로

복지서비스

서비스 신청

복지지도

복지위기관리

복지신고

로그인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화면 따라하기

복지서비스 신청서식

민원서비스 신청

민원서비스 신청

가족정보 제공 동의

복지급여제외변경 동의

작성 신청 요청 동의

증빙 서류 제출

화면 따라하기

증명서발급·진위확인

증명서발급

증명서 진위 확인

장애인등록증 진위 확인

사회서비스 신청

시설 이용 신청

자주 찾는 서비스

복지서비스

서비스 신청

복지지도

복지위기관리

복지신고

내 손안의 복지/복지로 모바일앱

바로가기

모든 서비스 이용하기

간편인증

네이버, 카카오, 또는 금융기관 등 민간 전자서명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로그인하기

간편인증 이용 안내

금융 인증서

금융 결제원의 안전한 클라우드에 발급 및 저장되어 관리 되는 인증서로 로그인하기

공동 인증서

별도로 은행같은 금융기관이나 공식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전자서명을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하기

복지로

복지서비스

서비스 신청

복지지도

복지위기관리

복지신고

복지지갑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서비스 신청

증명서발급·진위확인

증명서발급

증명서발급

증명서 발급 안내

- 증명서 발급은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를 포함하여 6종을 온라인에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종은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외부 사이트로 링크)
- 신청서 작성 후 '복지지갑>증명서 발급내역'에서 출력, 정부전자문서지갑 전송, 한맥스 전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발급 수량은 1부만 가능하며, 당일 발급 신청한 증명서는 당일(23시 59분)까지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계층확인' 자격보유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격보유여부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가능)
- 자활근로는 자활근로자 확인서 메뉴에서 발급 가능

발급 서비스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바로가기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신청
의료급여 증명서	발급신청	자활근로자 확인서	발급신청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발급신청	장애인 증명서	발급신청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신청	한부모가족 증명서	바로가기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제출명	바로가기		

참고 6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발급 방법

국민건강보험

통합검색 | 회원가입 | 로그인

민원서비스 | 건강묘아 | 정책·제도 | 정보공개 | 국민소통·참여 | 공단소개

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

서비스찾기

건강보험 자격	서비스 유형	분야		대상 유형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 피부양자 ☐ 사업장	☐ 신고/신청 ☐ 발급 ☐ 조회 ☐ 비로가기	☐ 자격 ☐ 납부 ☐ 현금급여 ☐ 의료비지원	☐ 보험료 ☐ 환급금 ☐ 현금급여 ☐ 본인부담 완화	☐ 임출산 ☐ 장애인 ☐ 아동/청소년 ☐ 만65세 이상

키워드: 전체 [v]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검색

선택된 필터 (0/10)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검색 결과 1개 | 목록 표시 개수 12개 | 정렬기준 최신순 | 조회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발급하기

붙임 목 차

[서식1] 2027학년도 영재교육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원신청서	23
[서식2] 2027학년도 영재교육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학교장 확인서	24
[서식3] 2026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대상자 확인서	25

[서식1]

2027학년도 영재교육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원 신청서

학생 성명			생년월일	
소속 학교	() 학교 ()학년 ()반			
지원 기관	()영재교육원 ()분야			
학부모 성명			전화번호	
주소				
전형 유형		순위	지원 자격	
사회통합 전형	기회균등전형	60% 우선	유형 ()	
	사회다양성전형	1순위	유형 (), 가구원수 (인)	
		2순위	유형 (), 가구원수 (인)	
본인은 2027학년도 사회통합전형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지원함에 있어 지원 자격 및 증빙 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합격한 후 증명서 위조 및 누락 등 부정 입학이 확인되었을 경우 ‘합격 및 입학 취소’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학 생 _____ (서명) 보호자(법정대리인) _____ (서명) ()영재교육원장 귀하				

※ 지원 유형

- 기회균등전형 : () 안에 해당 지원 자격 기재
- 사회다양성전형 : () 안에 해당 지원 자격 및 가구원 수 기재

※ 기회균등전형자는 선발 전형료 면제(사회다양성전형자는 전형료 납부해야 함)

[서식2]

2027학년도 영재교육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학 교 장 추 천 서

학생 성명		생년월일	
소속 학교	() 학교 ()학년 ()반		
지원 기관	()영재교육원 ()분야		
전형 유형		지원 자격	
기회균등전형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추천 사유	※기회균등전형 중 학교장 추천의 경우에만 작성		
위 학생을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에 따라 해당 지원 유형 및 지원 자격에 적합하게 선정하였음을 서약하며, 위 학생을 2027학년도 영재교육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00 학 교 장 [직 인] ()영재교육원장 귀하			

2026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 확인서

요청일		2026. .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학생과의 관계		
대상 학생	성명		학년		생년월일		
교육비 지원 여부 (해당 칸에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PC	인터넷	
☐	☐	☐	☐	☐	☐	☐	
지원 기간	20__. 0. 0. ~ 20__. 0. 0.						
확인서 발급사유	2027학년도 영재교육원 사회통합전형 지원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임을 확인) ⇐ 해당 내용을 기재						
위와 같이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OO 학 교 장 [직 인]							

학교장 직인이 없는 확인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 본 확인서는 학생 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만** 발급합니다.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게도 발급 가능)

* 본 확인서는 발급사유에 맞게 활용하는 것만 유효하며, 발급사유 이외 목적의 증빙 자료로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